

I

지원방안

○ (지원대상) 코로나19 재난으로 직·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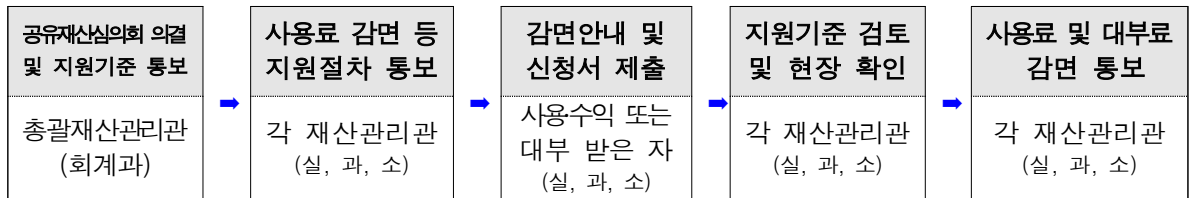
- 지원기준

- ①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,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
- ②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- ③ 개인사업자 및 개인

- 지원제외

- 임대기간 종료 후 무단 점유자
- 개별법령에 따른 既 감면자, 농작물 경작, 협회·단체 사무실, 소액 등

- 지원절차



- 처리·환급방법

- 당해연도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에서 감액 후 환급하고, 사용료 미납한 경우는 부과된 사용료에서 감액 후 차감된 금액만 납부

○ (지원규모)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인하된 요율을 적용

- (당초) 사용료율 1천분의 50 → (변경) 사용료율 1천분의 10 *80%인하효과
- 사용료 산출 : (건물평가액+부지평가액) × 사용료율(↓)

○ (적용시점) 2020. 2. 1. ~ 7. 31. (6개월) 소급 적용

-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종료시점 결정